

안산도시계획(변경)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

의 안 번 호	1014
------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- 와동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안산 도시계획(재정비)에 입안되었으나,
- 안산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초등학교와 주차장이 인접되어있는 것은 교통사고위험 등이 있어 교육환경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유보되어,
-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및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용도지역 결정(변경)
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m^2)	변 경 사 유
	기 정	변 경		
계			5,710	
안산시 와동 274번지 일대	보전녹지 지 역	자연녹지 지 역	5,710	• 와동 공공청사와, 주차장 시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당초	변경	변경후	
신설	공공청사	-	와동 280-1일원	-	2,702	2,702	• 와동주민자치센터 이전을 위해 용도지역변경후 시설결정

3. 기대효과

-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계획 수립.

4. 추진경위

- 1999. 12. 15 : 주차장 입안(신문공고)
- 2000. 4. 28 : 공공청사(와동사무소)입안(신문공고)
- 2000. 5. 30 :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
- 2000. 6. 2 : 도시계획(재정비) 결정 신청(안산시→경기도)
- 2001. 3. 26 : 동사무소 이전결정요구(와동주민 900여명)
 - ※ 주민요구로 재 입안 추진
- 2001. 5. 19 :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(신문공고)(주차장과 공용의청사 부지 상호 변경)
- 2001. 5. 24 : 안산시 의회 의견청취
 - ※ 와동동사무소 진출입시 교통정체가 예상되며, 민원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.
- 2001. 7. 20 :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
 - (주차장에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등하교 문제 및 주차장접근 재검토 공용청사 진출입시 교통처리 대책 검토)
- 2001. 11. 8 :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(신문공고)

5. 검토의견

-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을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므로 동 안건과 같이 결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6. 관계법령 발췌내용

○ 도시계획법

第22條(住民 및 地方議會의 意見聽取) ①建設交通部長官, 市·道知事, 市長 또는 郡守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을 立案하는 때에는 住民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都市計劃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(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)이거나 大統領命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주차장법시행규칙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제3호

: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. 다만,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가.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수 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
- 나.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
- 다.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
- 라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